



통권 496호

2024 | 12

# 가정상담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의 2024년도 새 이사진으로 구성된 정기 후기 이사회가 지난 11월 28일 열려 이사회에 회부된 안건토의에 앞서 이사장 선임을 논의한 바 차명희 이사장의 유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전회 회의록 낭독, 안건토의로 이어져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상담소 업무규정 중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34번)



본소는 지난 11월 14일, 법원행정처의 지목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3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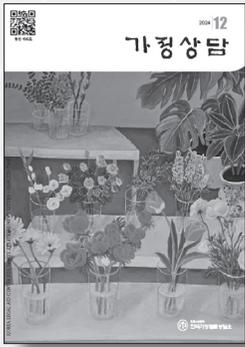
본소에서는 지난 11월 6일 가정폭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본소에서 진행 중인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관련기사 34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공 : 공정한 판단  
정 : 정정당한 실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legalaidcenter>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s://www.youtube.com/(한국가정법률상담소))



- 4 • 이달의 메시지
- 6 • 특집 |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 ②
- 27 • 가정폭력상담실
- 29 • 어떻게 할까요
- 31 • 좋은 책  
돌봄, 동기화, 자유
- 32 • 결혼과 인생(241) 영화 이야기  
미래의 미라이 \_ 김용언
-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7 • 소송구조

\* 원고 넘쳐 특별기획과 기획연재는 쉬어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족 관련 모든 법과 제도, 정책의 시작에

##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에 대해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는 부부갈등과 이혼에 대해 차분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하여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상담소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상담소는 오랜 기간 사적영역으로 치부되어 온 가정, 가족의 문제를 가정의 담 밖으로 끌어내 법과 제도의 영역인 광장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소와 저를 비롯한 상담소의 구성원들은 어쩌면 양극단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아 왔습니다. 상담소는 불합리한 가부장제 아래 차별받던 아내와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하여 “이혼을 부추기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왔고 꾸준한 가족법 개정운동 결과 호주제 폐지를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함 아닌 모함을 겪어 왔습니다. 저는 이혼숙려제도 도입을 주장하던 2005년 당시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는 “가정파탄을 조장하고 가족제도를 어지럽혀 여권신장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라고 하고,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는 까닭에 또 다른 쪽에서는 “보수적인 가족주의자”라고 한다.’ 하지만 저와 상담소는 가정파탄을 조장하지도 않았고 보수적인 가족중심주의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상담소의 구성원으로 일하면서 제가 얻은 경험과 생각을 외면할 수 없는 경험론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결혼이 무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이렇듯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법률구조라는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상담소를 찾는 수많은 내담자를 위해 상담소에서 마련한 프로그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램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는 이러한 상담소의 로드맵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니 법과 제도의 개정과 제정이 절실해져서 가족법 개정운동을 펼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개개인의 의식개혁도 필요했기에 시대에 앞서 다양한 가족구성원에 맞는 법 교육, 사회 교육 나아가 취미 교육까지 진행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센터 등이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상담소에서는 가족법, 재산법, 세법 강좌를 열었고 고부갈등의 해소를 위해 어머니 학교,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를 열었으며 당시 사회상에 비추어 남편과 사별한 여성을 위한 자조 모임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후 다양한 사회 교육과 프로그램이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상담소는 법과 가정문제를 중심으로 한 본연의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2년 1월 상담소는 프로그램 당시 증가 추세에 있던 이혼 문제를 직시하고 준비된 결혼과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으로서의 성공적인 이혼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여 ‘결혼 아카데미’ ‘부부갈등의 해결을 위한 워크숍’ ‘NEW LIFE’ 등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오늘날까지도 사회상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여 다양한 주제로 ‘등지고실’이나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각도의 프로그램 및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등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 1, 2 단계 중 집단심리상담으로 진행해 왔던 2단계가 2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접어들면서 당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이혼’에 대해 개인과 사회 모두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거나 앞둔 많은 경우 ‘이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 후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 후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상담소는 제도적으로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이혼을 고려하거나 앞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04년 2월부터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 보기’를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상담 및 상담소에서 제작한 이혼 관련 비디오를 시청하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단계와 전문가가 진행하는 집단심리상담의 2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2004년 4월 시작했던 2단계가 지난 11월 25일 총 291회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1단계의 경우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 가운데 이혼과 부부갈등을 위한 법률상담의 한 과정으로 정착되어 있어 앞으로도 그 내용을 보완하며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성격으로 이혼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심리상담을 시도하고 있어 상담소는 이 또한 일단 멈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상담소는 언제나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가족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선택에 도움이 되기 위한 다양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상담소의 모든 프로그램은 소송구조를 포함한 완벽한 법률구조 사업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을 맞아 진행한 상담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든 전문가 여러분이 입을 모아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가장 원칙적이고 일관된 방향에서 가정폭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한국 가정법률상담소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상담소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담소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진실한 마음과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소의 이혼 전 프로그램 2단계를 진행하며 많은 내담자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준 김명순 상담소 이사이자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소장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상담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분의 건강 그리고 가정마다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특집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 ②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며

## 토론문(1)

배 인 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2차례나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회가 만료로 자동폐기 되고 말았습니다. 전부 개정 법률이니만큼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많이 노력이 담긴 개정안이 다시 새로 상정되길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안이 된 때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으니 폐기된 안의 재상정보다 폐기된 법률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항상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이번에도 시의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주셨고, 발제자인 김교수의 논문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폐기안은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신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삼아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하였습니다. 하루속히 폐기안의 문제를 해결한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정되어 국회 입법절차를 통과하길 기원하면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폐기안의 내용에 몇 가지 개선을 제안합니다.

### 1.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서 가사사건으로 확인된 사건을 가사소송법에 규정하였는바,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에서 확인된 미성년 후견인이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심판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식은 별표 3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2.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가항에 추가하고 근거 규정에는 민법 제 837조를 유추 적용하는 경우로 생각합니다. 또 폐기안 별표 3순번 2의 가항 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혼인 중의

\* 지난 10월 25일 본소 강당에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의 검토 과제 -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본소에서는 시행 33년이 된 가사소송법이 정체상태를 벗어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절차법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하였다.

<가정상담> 11월호에 김원태 교수의 주제발표를 요약해 실은 데 이어 이번 호에는 토론문과 토론문에 대한 주제발표자의 보충의견을 게재한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와 토론문 전문은 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에서 볼 수 있다.

양육비 지급청구가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방향으로 삼은 폐기안의 특징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절차법의 개정으로 하나의 사건 유형이 창설되는 것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 2.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등

폐기안은 제6조에서 가사사건 당사자 사이의 사건으로서 가사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사건이 가사사건과 함께 해결된다면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모순되는 결론을 방지할 수 있고 후견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 역할과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가정법원은 관련 민사사건이 있는 해당 지방법원에 민사사건의 이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토론자는 이 규정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나아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법률유보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의 가사소송 사건은 단독재판부 관할인데, 관련 민사사건은 합의부 관할이라면 가정법원에 이송이 되더라도 단독재판부와 합의 재판부로 나뉘어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안 제6조와 제7조 제6항의 규정만으로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대법원 규칙이 보충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3. 관할

폐기안은 제37조에서 혼인관계사건의 관할을 정하면서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때에는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제2호에 규정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였고,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되(폐기안 제112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등 사건은 사건본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

원도 관할하도록 정하였습니다(폐기안 제120조). 특히 양육비의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도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폐기안 제142조 제6항, 제143조 제7항, 제144조 제3항). 이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법이 정한 관할규정이 너무 경직되어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sup>1)</sup> 이에 발제자의 “전체 혼인관계 소송(A matrimonial action) 사건에 관하여 전속관할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혼소송의 관할은 관할의 경직화를 방지하고 당사자의 편의(the convenience of the parties)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상 이혼청구는 상대방 당사자만 소제기권자이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이 허용되는 등 소송물에 관하여 임의처분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다른 가사소송과 달리 반드시 전속관할로 할 이유는 없으며, 공익성의 정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의관할로 하고 합의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제1안). 여전히 전속관할을 유지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면 엄격하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할 것이 아니라 전속관할 중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제2안).”는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한편 이렇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한 개정안은 친생자관계사건 중 아버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사건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면서, 인지청구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였습니다(폐기안 제42조). 그 결과 비혼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를 위해 인지청구를 진행하려면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실제 서울에 미성년자녀와 거주하면서도 지방에서 인지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 자세한 내용은 배인구, “관할의 의미”, 법률신문 2022. 10. 17.자 참조  
<https://www.lawtimes.co.kr/opinion/182357>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토론자는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외에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지청구의 특성상 상대방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서 재판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양육비 청구와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면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도 관할이 있는 것으로 보충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폐기안 제46조는 입양관계사건에 관해 양부모 보통재판적 주소지 전속관할로 규정하였는데 제99조는 양자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양자, 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였습니다. 입양관계사건이 양부모와 친생부모 등 주로 성년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이지만 사건본인의 이해관계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양된 미성년 자녀가 학대를 받아 재판상 파양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토론자는 입양관계 사건에 대해서도 양자, 친양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폐기안 제128조는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합의로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당해 가사소송사건의 관할은 서울가정법원인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수원가정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 이송을 하여야 하는지요. 토론자는 이런 경우에는 수원가정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4. 비송능력 관련

가사비송절차의 성질과 그 특성상 행위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도 비송능력을 인정하여 절차주도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폐기안 제50조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해 비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 반대해석상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3의 2호 나. 다. 라목의 사건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비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sup>2)</sup> 그런데 폐기안 제121조는 위 별표 3의 2호, 나목의 사건에 관하여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론자는 폐기안 제50조의 규정과 같이 폐기안 제119조에서 양육비 청구사건도 미성년자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① 이혼 후 양육부모가 사망한 후 비양육부모의 친권이 부활되지 않고, 미성년후견인도 선임되지 않은 경우, ② 미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가 양육비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미성년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절차구조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5.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의 즉시항고권자 관련

폐기안 제122조는 당사자(상대방) 이외에 제3자인 다른 청구권자에게도 친권에 관한 사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인정할 특별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발제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제3자가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의 고지가 있거나 결정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항고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한 행위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2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각 사건
2.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중 별표 3 제1호의 각 사건,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양육비 지급청구 사건, 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의 각 사건.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사건 중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에 관한 처분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기안 제87조는 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후견에 관한 사건의 결정을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후견인(그 결정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 및 후견감독인(그 결정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률조항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에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6.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감치) 관련

폐기안 제151조는 강력한 이행확보제도인 감치에 관하여 관할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현행법의 요건을 조금 완화하여 감치 제재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감치결정이 집행불능된 경우 동일한 이행명령을 근거로 다시 감치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다수의 실무는 하나의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치재판을 할 수 있고, 감치결정이 집행불능이 되었다면 새로운 의무이행위반에 근거한 이행명령을 발령받아 비로소 다시 감치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운용됩니다.

하지만 폐기안은 제143조 제6항에 따른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은 단 1회의 감치결정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감치결정이 집행불능이 되면 다시 감치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폐기안 제154조는 제151조에 따른 감치를 명하는 재판절차와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강하다 할 것이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I. 서론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 12. 31. 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정 이후 33년이 흐르는 동안 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가정법원 관장 사항이 확대되었지만 아직 전면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① 먼저 가사재판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의 기본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두 번째로 이혼, 자녀 양육 등 가사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가사재판절차에서 국민의 권리 보장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의 확대 설치에 따른 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뒷받침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2013년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발족 이후 10년 이상 논의되어 온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새로 발의될 법률안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II.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의 필요성

### 1. 가사재판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고유의 기본법 마련

현행 가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지 못하고 직접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가사소송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가사비송절차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

법」을 준용하고 있어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이 후견 복지 조치를 취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개입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고, 상대방 또는 실질적인 반대당사가 존재하는 사건이 있어 단순히 민사비송사건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 사건 유형별 절차를 직접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민이 개별 사건의 재판절차나 관할, 불복 방법 등 절차적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항을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절차의 상당 부분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가사소송법은 73조까지 규정된 반면, 하위법령인 가사소송규칙은 그보다 많은 138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법 소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 개정이 아닌 대법원규칙 개정의 형식을 취하거나, 법원이 후견 기능을 확대하며 시행한 제도와 실무를 정착시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규범화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불균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도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마저 하위법령인 대법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계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사소송법의 체계를 개편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고, 다른 법률을 준용하기보다 사건 유형별로 구체적인 절차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며, 법률사항과 규칙사항을 개편하는 방법으로 가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sup>3)</sup>

## 2. 국민의 의식과 사회 변화, 가사재판절차에서의 권리 보장, 편익 증진 측면

가사소송법 제정 이후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 가입을 계기로 아동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식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의 결과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가 사건본인이거나 당사자인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진술청취,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상실 청구 허용 등 가사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권리와 절차의 강화, 양육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이행확보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을 중시하는 새로운 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의사능력에 흠결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가 이어지면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가족관계 관련 가사소송사건이나 신분적 권리와 관련한 가사비송사건에서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행위 또는 비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밖에 소송결과에 따라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소송경제 측면에서 당사자의 편익을 증진하거나 실무상 필요함에도 규정이 없어 적용하지 못하는 각종 제도 역시 가사소송법에 직접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sup>4)</sup>

위와 같이 가사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충하는 한편,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강화하고, 가사사

3) 이와 관련하여 폐기안은 현행 가사소송법이 가사소송사건을 가류,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라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한 것과 달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구분함으로써 사건을 알기 쉽게 재분류하였다(폐기안 제4조). 또한 하위법령인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하고 있던 고지 규정 등과 같이 소송절차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켜 법률사항과 규칙사항을 정비하였으며(폐기안 제68조, 제73조 등), 가사비송사건을 사건 유형별로 총 15개의 절로 나누어 편성함으로써 관할, 즉시항고 등의 불복 규정, 고지 규정 등을 사건유형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폐기안 제80조, 제89조, 제92조 등). 폐기안은 가사사건에 맞는 절차를 독자적으로 규율하였을 뿐 아니라 소송법의 체계와 사건유형별 절차를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가사재판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4) 폐기안은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① 가사소송법의 목적(폐기안 제1조)에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를 추가하고, ② 미성년자가 사건본인이거나 당사자인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보조인제도를 도입하며(폐기안 제16조), ③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경우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 진술의 청취를 의무화하고(폐기안 제20조), ④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의 양육 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을 추가하며(폐기안 제37조, 제120조), ⑤ 부모가 아닌 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건의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실무상 필요한 각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사재판절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입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정법원의 후견 복지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고 전국적으로 균질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3.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측면

가사소송법 제정 당시 전국에 가정법원이 1곳뿐이었으나 현재는 8곳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도 증가하였으며, 가정법원의 후견 복지 기능에 대한 대외적인 요구와 기대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고하거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등 당사자와 사건본인을 대상으로 각종 후견 복지 개입을 하고 있으나 현행 가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재판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후견 복지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sup>5)</sup>

이와 같이 가사재판절차에서 가정법원이 당사자나 사건 본인 등의 생활환경이나 관계 개선 등을 위한 후견 복지적

## Ⅲ.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의 검토과제

### 1. 면접교섭보조인제도 도입 검토

최근 이혼사건에서 면접교섭을 둘러싼 부모의 갈등과 대립이 점점 심화되어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녀의 탈취가 일어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현재 전국 14개<sup>6)</sup>의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며 부모의 갈등이 심하거나 가족관계가 악화되어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부모와 자녀에게 중립적인 장소에서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센터는 쌍방 부모의 협력을 전제로, 이혼사건의 진행과 별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일방이 자녀의 거부 의사 등을 이유로 면

자를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에 추가(폐기안 제121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가사재판절차와 관련하여 ①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된 가사사건의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결과가 모순 저촉될 우려가 있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민사사건의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사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폐기안 제6조), ②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에 한하여 소송능력을 확대하며(폐기안 제28조), ③ 소송절차 공개의 예외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하고(폐기안 제30조), ④ 이해관계인에 대한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제도를 도입하며(폐기안 제31조), ⑤ 재판상 이혼 및 파양사건에 청구의 포기 및 재판상 화해 제도를 도입하고(폐기안 제41조, 제48조), ⑥ 가사비송사건에도 선정당사자 제도를 도입하며(폐기안 제51조), ⑦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 청취 규정을 정비하고(폐기안 제83조), ⑧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를 인정하며(폐기안 제114조), ⑨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의 근거를 신설(폐기안 제116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밖에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① 사전처분의 취소 변경제도의 신설과 함께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사전처분을 집행권원으로 한 다양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지니지 아니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공백을 미리 방지하고(폐기안 제140조), ②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인도청구의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확대하여 집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폐기안 제145조), 양육비 지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폐기안 제151조).

5) 폐기안은 재판장 등이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생활환경이나 관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지원, 각종 외부 기관의 프로그램이나 상담 연계와 같이 당사자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폐기안 제12조),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폐기안 제14조)을 포함하고 있었다.

6) 서울가정법원(본원, 2014년), 서울가정법원(광역, 2024년), 광주가정법원(2016년), 인천가정법원(2016년), 전주지방법원(2020년), 대구가정법원(2021년), 수원가정법원(2021년), 대전가정법원(2021년), 부산가정법원(2022년), 춘천지방법원(2022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2년),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2022년), 청주지방법원(2023년). 괄호 안은 개소연도임.

접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고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지원을 계속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소극적인 양육친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한 면접교섭만을 고집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2013. 2. 구성)가 2015년 법무부에 제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제안한 면접교섭보조인 제도<sup>7)</sup>의 도입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보조인이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면접교섭 실현 과정에 개입하고 그 내용을 가정법원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실질적인 면접교섭을 활성화하고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이 추진 중인 면접교섭센터 설치 지역 확대와 면접교섭보조인제도 도입을 통하여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개입으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2.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 등

폐기안 제80조 2항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1의2호와 동일하게 '후견인 등의 선임 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이하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을 '후견개시 등의 결정을 한 가정법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8.

3.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2018년 개정안)에서는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을 '후견개시 등의 결정을 한 가정법원 본원'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후견감독사건을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법원 본원에서 담당하게 할 것인지, 후견인과 사건본인의 사법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포함한 후견개시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게 할 것인지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원 후견감독실무는 후견센터가 설치되었거나 비교적 규모가 있는 가정법원 본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후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후견감독사건의 관할을 2018년 개정안과 같이 '후견개시 등의 결정을 한 가정법원 본원'으로 변경하여 가정법원 본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후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폐기안의 관할 규정을 유지한다면 피후견인의 보호를 위하여 가정법원 지원의 후견감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즉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폐기안 제84조<sup>8)</sup>는 법원이 후견감독 과정에서 후견인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이나 재산의 횡령 등 일탈행위를 인지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규정으로 법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후견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후견인 변경과 형사고발을 생각할 수 있으나, 후견인 보수를 지

### 7)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제출안 제147조(면접교섭보조인)

- ① 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면접교섭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 또는 가사조사관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면접교섭보조인으로 선임한다.
- ③ 면접교섭보조인은 대화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사 확인, 면접교섭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견 조정, 면접교섭의 준비, 면접교섭을 전후한 자녀의 인도, 면접교섭 실시의 참여 등 면접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조력하며, 면접교섭결과를 가정법원에 보고한다.
- ④ 가정법원은 면접교섭보조인이 임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면접교섭보조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직권으로 면접교섭보조인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면접교섭보조인의 선임 및 해임절차, 수당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8) 이는 가사소송규칙 제38조의2, 제66조 규정을 법률로 편입한 것이다.

폐기안 제84조(후견사무 등에 관한 지시)

가정법원이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 대하여 후견사무 또는 후견감독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급할 재산이 없는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를 찾기 어려워 후견인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안 제84조의 지시에 위반한 후견인에 대한 과태료, 감치 등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국선후견인 제도 도입 필요

민법 제955조는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후견인의 보수를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수를 지급할 재산이 없고 마땅히 돌볼 친족도 없는 피후견인에 대하여는 실무상 후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국가가 자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후견인에게 최소 보수를 지급하거나 공적 기관이 공공 후견인을 관리, 운영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가 치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가 극소수이고,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을 지원하지 못하며, 행정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원이 심리 중인 후견 개시 감독 사건에서 돌볼 친족이 없거나, 친족의 학대와 방임이 문제되는 경우, 이미 친족후견인이 선임되었으나 그가 고령, 장애 등 사유로 더 이상 피후견인을 보호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에 피후견인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후견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sup>9)</sup> 서울가정법원은 2018년부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절차구조 제도를 활용하여 국선후견인 제도를 시범운영하였고, 2024. 9. 30. 기준 226건(누계)의 사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방임과 학대의 우려에 노출되어 있는 피후견인의 복리와 보호, 권리실현을 위하여 가사소송법에 국선후견인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원이 보다 쉽게 제도를 운영하고, 전국 가정법원에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발표문의 검토사항에 관하여

먼저 가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오랜 연구를 정리한 발표자

의 제안에 관하여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실무가의 입장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한 내용들이 이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개별 사항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의 관할을 임의관할로 하거나 선택관할을 인정하는 안(발표문 19쪽)에 관하여는 이혼사건은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규정 변경에 따라 미성년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도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에 관한 규정 중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의견(발표문 15쪽, 24쪽)을 제시한 부분은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과 절차의 안정성을 형량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폐기안 제79조 제2항에 관한 부분(발표문 31쪽)은, 경찰관서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제한적으로 회신하고 있는 실무를 반영한 것이므로 폐기안 제19조 제2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의 즉시항고권자를 추가하는 안(발표문 36쪽)은, 자녀의 소송능력, 실질적인 절차보조가 실현되는지의 문제, 항고권자의 확대에 의하여 실무상 어려움은 없는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 1. 장애인을 위한 절차보조인 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당사국에게 장애인의 법적능력의 향유와 그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조

9) 법률안 예시: 법원은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을 선임, 변경함에 있어 사건 본인의 친족 가운데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고, 사건 본인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건 본인의 재산에서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건 본인,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적절한 자를 국선후견인 또는 국선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sup>10)</sup>

이러한 취지는 생활관계의 형성에 관한 실체법상으로는 물론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절차에 있어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는 특히 동 협약 제13조에서도 사법접근성이라는 제목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sup>11)</sup>

협약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협약 제12조에 관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공표한 일반평석 제1호(General Comment I)에 의하면, 협약 제12조의 법적능력의 향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조약)에서 보장하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제16조)가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차별 없이 실현될 것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사를 위한 지원 조치는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경제적 권리와는 달리 당사국은 이를 즉시 실현하여야 할 국제법상의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사법절차상의 지원은 민사소송절차상으로도 실현되어야 하지만 당사자의 진의를 중시하는 가사소송절차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2년 가사소송법 개정안 제16조가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장애인의 사법절차상의 의사결정 지원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개정안 제16조의 취지는 대체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타당하지만,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복리'보다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절차보조인으로서 사회복지사나 장애인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사람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절차보조인 선임 청구권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절차보조인의 선임은 당해 장애인이 행위능력이 제한되었는지, 피후견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관할과 민사법원에서의 이송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회복청구가 민사법원의 관할 사건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2022년 개정안 제6조는 민사사건 중 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 사건을 유류분반환청구와 이혼시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 대상재산의 명의신탁 해지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밖에 상속회복청구의 청구에 있어서도 관할 이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회복청구의 출소기간의 도과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관할 이송 사유를 제한적 예시가 아니라 열거적 예시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재판관할의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3. 가사소송에서의 능력에 대하여

발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는 실체법상 행위능력에 따라 소송능력의 여부가 결정되지만, 가사소송에서는 행위능력의 제한과 관계없이 의사능력만 있다면 가사소송에 관한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실체법적으로는 피성년후견인의 가족법상 법률행위(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인지 등)에 있어서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가사소송법상으로는 원고로서의 제1심 소송행위와 항고, 항소로 소송능력을 제한하고 있다(2022년 개정안 제28조 제1항)는 점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의 실체법적 제한은 피성년후견인의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방향에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되, 관련행위에서의 본인의 진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이

10)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법 앞의 평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하 생략)

11)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사법접근성) 1. 당사국은 수사과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하 생략)

혼이나 미성년의 입양, 재판상 파양 등 외에 혼인, 입양신고, 협의상 파양 등에 있어서는 본인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가장 혼인이나 가장 입양의 위험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모두 성년후견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안전장치는 피성년후견인 아닌 판단능력이 취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성년후견인을 포함하는 의사능력 취약자의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서 진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혼인, 입양 신고에 있어서 당사자의 출석과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의한 의사 확인절차를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가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잘못된 소송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극적 소송능력을 제한하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항고나 항소와는 달리 재항고, 상고 등에 있어서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절차적 권리의 중요성에 비하여 소송능력 제한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은 부족해 보입니다. 이점에 관하여 설명을 보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2022년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성년후견인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러한 경우에 본인의 소송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2022년 개정안 제28조 제4항 제2문). 발제문의 설명에 따르면 소송행위의 경합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소송 기술적 측면에서 개별적 소송행위에서 소송대리를 하는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우선하는 취지는 이해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발제문에서도 가사절차에서는 변론주의가 제한되므로 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족하다고 하여 이러한 제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를 결정하는 경우에 본인이 동의를 얻거나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둘 필요가 있지 않으나 생각됩니다.

#### 4. 비송능력에 대하여

같은 맥락에서 비송사건의 절차능력에 관하여 발제문에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능력의 보충(Supplementation)과 양자의 비송행위의 충돌방지라는 절차행위의 특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행위를 우선한다는 입법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사비송절차에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가정법원은 어느 한쪽의 의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라는 견해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 5. 성년후견사건의 청구 취하와 후견사건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이익에 대하여

2022년 개정안 제61조는 청구 취하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후견사건 등 일정한 청구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능력이 취약한 피후견인이 될 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이익의 보호의 관점에서 그 허부를 결정하면 될 것인지만, 다만 이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 당사자의 이익의 보호는 당사자의 의사나 희망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법원의 실무는 객관적 관점에서 합리성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이익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지원의 지원은 본인의 희망과 선택을 존중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 후견사건의 일반규정으로 이러한 원칙을 선명(宣命)하는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6. 심리방법에 있어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앞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절차보조인 등 절차조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지만, 특히 당사

자의 심문이나 진술 청취에 있어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의사결정지원 또는 합리적 편의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절차조력이 제공되어야 하고 쉽사리 진술할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 절차보조인에 관한 규정 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심문이나 진술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본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근친, 사회복지사, 혹은 그러한 의사소통에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사절차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영국 정신능력법에서는 중요한 신상결정에 관하여 본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독립적 의사능력대변인(Independent Mental Capacity Advocate) 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확보수단을 강화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은 법 개정 이후 계속되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다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가사소송법 개정 경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장시간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으셨습니다. 비록 개정의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개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법무부는 최금숙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총 21회의 회의 및 검토를 거쳐 2018년 3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 5월 제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거쳐 2022년 11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4년 1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 진술인 분들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주셨고, 개정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폐기되었으나, 개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계속되어 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제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 1. 토론에 임하며

#### 2. 가사소송법 개정 의의

가사소송법이 시행된 1991년 1월 1일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일부개정 외에 본격적인 개정은 없었습니다. 현재의 가족문화와 사회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으로 복잡한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의 법률접근성을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고자 일정한 경우에 소송능력을 부여하고, 그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의 검토 과제 관련 지정토론에 대한 보충 의견\*\*

김 원 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사사건으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폐기안은 부모 중 한쪽(양육친)이 다른 한쪽(비양육친)을 상대방으로 하여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폐기안 제121조 제1항 전단)와 미성년 자녀가 부 또는 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폐기안 제121조 제1항 후단)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의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청구' 사건도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 사건임을 명확히 하려면 폐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sup>12)</sup>

## I. 배인구 대표변호사님의 토론 관련

### 1.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관련

미성년 후견인의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청구 사건을

## 2.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등 관련

폐기안에서는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결과가 모순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와 동시

[별표 3]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제4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사건 내용	근거 규정
1.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 (생략)	(생략)
2.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	
<b>폐기안</b>	
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혼인 중의 양육비 지급청구,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를 포함한다)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혼인무효 청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될 때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3조
<b>수정안 (제1안)</b>	
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혼인 중의 양육비 지급청구,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 및 미성년 후견인의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청구를 포함한다)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민법」 제837조(미성년후견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무효 청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될 때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3조
<b>수정안 (제2안)</b>	
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혼인 중의 양육비 지급청구, 과거의 양육비 지급청구를 포함한다)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 사건	「민법」 제837조(미성년 후견인의 비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청구를 포함한다)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무효 청구에서 그 청구가 인용될 때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3조

\*\* 이 글은 2024. 10. 25.(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8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필자의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의 검토 과제”라는 주제 발표 관련 지정토론에 대하여 당일 필자가 보충의견을 개진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2)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참조.

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민사사건 중 가사사건 당사자 사이의 ①유류분반환청구 사건, ②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사건이 지방법원 제1심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 민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폐기안 제6조 제1항).<sup>13)</sup>

단독 가사소송 사건과 관련 합의부 민사사건의 병합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은 이송된 관련 민사사건을 해당 가사사건과 병합할 수 있다는 규정(폐기안 제7조 제6항)만으로는 부족하여 대법원규칙이 보충할 수 있도록 법률 유보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폐기안에서는 이미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폐기안 제25조) 이에 관한 별도의 법률 유보 조항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할’과 ‘이송’에 관한 규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법률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sup>14)</sup> 만약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면 가사소송규칙이 본법보다 비대해져 있는 현행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가사소송규칙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에서 직접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합의부 민사사건 당사자의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폐기안 제7조 제6항에 제2문으로 “가사소송사건이 단독사건인 경우에 제6조에 따라 이송된 관련 민사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에 속하는 청구일 때

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가사소송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을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민사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폐기안 제7조 제6항 제2문 본문 단서).

### 3. 관할 관련

(1) ‘인지청구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외에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적어도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의 병합만이라도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도 관할이 있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sup>15)</sup> 또 ‘입양관계 사건’에서도 양자, 친양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도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토론자 의견에 동의합니다.

(2)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사소송사건의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현행법과 폐기안의 엄격한 이혼사건의 전속관할 구조에서는 해석상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sup>16)</sup> 이와 관련하여 이미 발표자는 이혼사건 관할의 경직성을 지적하였으며, 혼인관계 사건 중

13) 2018년 개정안에서는 관련 민사사건이 지방법원 제1심에 계속된 경우 해당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決定)으로 해당 지방법원에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을 요청할 수도록 제안되어 있었다(2018년 개정안 제6조 제1항).

14) 규칙사항은 직접적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 소송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말하며, 이는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김원태,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대한 관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267~268면.

15) 가사소송법 제정 전 구인사소송법에서 인지의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의 지방법원관할에 전속하였다(구 인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자관계, 양육비,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확립하기 위한 이 장(혼인외의 자)에 따른 소는 미성년 자녀와 부모 중 1명이 거주(in which the child and 1 of the parents lives)하는 곳, 부모 중 어느 누구도 같은 곳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거주(where the child lives)하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Mass. Gen. Laws ch. 209C, § 4.

16) 대표적인 사례로, 재벌그룹 계열사 사장 부부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수원가정법원이 설치되기 전 당시 항소심 법원(수

이혼사건에 한하여 임의관할 또는 선택적 관할로 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가정재판소는 인사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사소송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 규정(일본 가사사건 수속법 제257조 제244조)에 따라 신청된 조정에 관한 사건이 그 가정재판소에 계속하고 있고 조정의 경과, 당사자의 의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위반의 경우의 취급에 관한 규정(일본 민사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불구하고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인사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스스로 심리 및 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일본 민사소송법 제6조). 이를 자청처리(自廳處理)라고 합니다만, 사법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편리성을 배려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sup>17)</sup>

#### 4. 비송능력 관련

(1) 폐기안 제121조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별표 3, 제2호 나목)에 관하여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 약간 모순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비송능력 관련이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는 당사자적격, 특히 청구인적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폐기안은, “별표 3, 제2호 나목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사건

의 결정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의 변경 사건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도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폐기안 제121조 제2항). 이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당사자적격(청구인적격과 상대방적격)에 관한 현행 가사소송규칙 제99조를 계수하여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청구의 청구인적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부모에게만 있으며(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 제909조 제4항, 가정법원은 직권: 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예외적으로 친권자 변경 청구의 경우에도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청구인적격을 부여하고 있어(민법 제909조 제6항) 자녀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당사자적격에 관한 문제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교차하는 영역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약 미성년 자녀에게 친권자 변경 청구의 당사자적격을 부여하려면 실체법인 민법 개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또 폐기안 제119조(폐기안 제121조의 오기)에서 양육비 청구사건도 미성년자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폐기안에서는 이미 “별표 3 제2호 가목의 사건 중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사건의 결정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자녀 및 검사도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폐기안 제121조 제1항 제1문).<sup>18)</sup>

원지방법원 가사항소2부)이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한 당시 가사소송법 제22조(폐기안 제37조)를 근거로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2단독)의 전속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였다. 「한국일보」, 2016. 10. 20.자 인터넷 기사 참조.

17) 자청처리는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사소송의 심리의 적정 및 신속과 당사자 출석의 편의 등의 관점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하는 것이며, 가정재판소가 공익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토지관할을 전속화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김원태, “일본 신인사소송법의 기본구조와 절차적 특징,” 「인권과 정의」, 제338호(2004년 10월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147면.

18) 현재로서는 미성년 자녀는 폐기안 [별표 3] 제3호의 부양에 관한 사건, ‘부양에 관한 처분(친족 사이의 구상청구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나는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에 따라서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가사소송법 나. 마류(類) 사건, 폐기안 별표 3, 제3호,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 오히려 필요하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는 미성년후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폐기안 제121조 제1항 제3문).

## 5.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의 즉시항고권자 관련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에서도 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고지의 대상에 관한 규정(폐기안 제87조)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건은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sup>19)</sup> 외에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녀에게는 자녀의 연령 및 발달정도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상실 심판: 자녀, 2.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상실 심판의 취소심판: 자녀,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및 자녀의 미성년후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본 가사사건수속법 제170조).

## 6.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감치) 관련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폐기안 제151조)에 따른 감치(Imprisonment)를 명하는 재판절차와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폐기안 제154조)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폐기안은 “제1항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라는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관할에 관한 규정(폐기안 제151조 제1항)과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폐기안 제152조)만 현행 가사소송규칙(가사소송규칙 제131조·제136조)에서 가사소송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본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 2). 감치결정이 집행불능된 경우 실무에서는 새로운 의무이행 위반에 관하여 이행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대한 위반행위를 기다려 다시 감치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sup>20)</sup> 그러나 실효한 것은 단지 감치결정(Order for committal)이지 이행명령이 아니며, 이행명령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의무이행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새로운 이행명령은 필요하지 않으며 동일한 이행명령을 근거로 다시 감치재판을 신청(an application for committal)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내(예를 들면, 00일 이내 또는 00월 00일까지 등)에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Lump-sum payments)을 받은 사람(폐기안 제144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명한 감치결정(폐기안 제151조 제1항 제1호)이 집행불능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은 필요하지 않고 동일한 일시금 지급명령을 근거로 다시 감치재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II. 이광우 부장판사님의 토론 관련

### 1. 면접교섭보조인제도 도입 검토 관련

법원행정처 2015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건의안)에서 제안된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가사소송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제도는 가정법원의 가사재판 과정에서의 후견적 기능이라기보다는 이행확보 과정에서의 복지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오히려 가사조사

19)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참가인 및 이러한 자 이외의 심판을 받을 자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가사사건수속법 제74조 제1항). 폐기안의 “가정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규정이다(가사소송규칙 제25조, 폐기안 제68조 제1항 본문).

20) 사법연수원 편, 「법원실무제요 가사(II)」, 원본 양장판, 사법연수원, 2021, 379면.

관의 확충이 더욱 시급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지원은 이미 가사조사관의 임무(건의안 제12조, 폐기안 제12조 제1항 제2호)로 되어 있으며,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 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업무는 '이행관리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양육비 이행법 제7조 제6항 제2호 제10조의 2).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당초 건의안에서도 법원사무관 등 '가사조사관'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면접교섭보조인으로 선임(건의안 제147조 제2항)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었습니다. 또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에 대한 별도의 실제법상 근거가 없으며 이 제도의 도입에는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sup>21)</sup>

## 2.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 등 관련

(1) 현행 가사소송법상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본문).<sup>22)</sup> 다만,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같은 호 단서). 이는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판단에 필요한 자료도 공통되는 것이 많으며, 후견개시 결정을 한 가정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편리하며, 적절한 판단에 이바지한다고 생각되어 후견개시 결정을 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일원적으로(ONE-STOP)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sup>23)</sup>

후견감독사건의 경우 2018년 개정안에서는 '후견개시 등의 결정을 한 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2018년 개정안 제81조 제2항), 폐기안에서는 현행법과 같이 '해당 결정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폐기안 제80조 제2항). 이는 후견감독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2018년 개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 후견사무 등에 관한 지시(폐기안 제84조)에 위반한 후견인에 대한 과태료, 감치 등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을 필수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임의적인 것으로 한 것(민법 제940조의4 제1항)은 가정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any person the court deems appropriate), 즉 전문적이고 소양 있는 성년후견인이 선임될 것으로 기대하고,<sup>24)</sup>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될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후견감독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수여하게 되어(민법 제940조의 7, 제955조) 피성년후견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외국의 경우 후견인 선임의 조건으로 후견인에게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후견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이 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충실히 이행

21) 이 제도는 독일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김상용, "절차보조인제도 및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론-가사절차에서 자녀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사법」, 제27호, 사법발전재단, 2014, 67면 이하 참조.

22) 종래 금치산 한정치산에 관한 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관할이었다(구가사소송법 제44조).

23) 김원태, 앞의 논문,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대한 관견," 273면; 김원태, "미국 뉴욕 주의 성년후견 심판 절차," 「가족법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42호), 한국가족법학회, 2011, 206면.

24) 그럼에도 후견감독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친형이 교통사고 보험금 1억 4천여만 원을 성년후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일부와 은행대출금을 합쳐 빌라를 구입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실을 발견한 법원이 후견인에게 현금을 계좌에 돌려놓거나 보험금 상당의 지분(Share)을 피성년후견인인 동생 명의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이를 무시하자,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변경사건의 심리를 개시하고 후견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한편 임시후견인(a temporary guardian)으로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로서는, 제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고단284 판결 참조.

할 것을 조건으로 충분한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sup>25)</sup>

### 3. 국선후견인 제도 도입 필요 관련

법원이 심리 중인 후견 개시 감독 사건에서 피후견인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후견인의 복리와 보호, 권리실현을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사소송법에 국선후견인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후견과 관련된 사건은 단순히 사인 사이의 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국선대리인 또는 국선후견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에서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비용부담을 국고로 부담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민사소송법 제65조 제5항)는 이유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 번호: 16259)에서도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만(안 제144조의2) 신설되지 못하였습니다.<sup>26)</sup>

### 4.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 관련

이혼사건은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규정 변경에 따라 미성년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도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 사이의 이혼관할은 달리 설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유리한 관할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성년 자녀를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sup>27)</sup> 이혼사건은 혼인의 무효나 취소와 같은 공익성이 강한 다른 혼인관계 사건과는 달리 임의처분성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혼관할은 조정의 경우와 소송의 경우 달리 적용되어 진정한 의미의 전속관할은 아닙니다(부진정 전속관할). 외국의 경우 이혼사건을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지 않고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대부분 임의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 5.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 관련

폐기안 중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행위의 대리를 시작한 때부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폐기안 제28조 제4항 제2문, 폐기안 제50조 제3항 제28조 제4항 제2문)와 관련하여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제한능력자의 자기결정권과 절차의 안정성을 형량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sup>28)</sup>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백의 구속력이 있지만(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제150조, 제257조), 가사소송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폐기안 제26조 제2항) 가사사건절차에서 소송능

25) 미국 네바다 주의 경우, Nev. Rev. Stat. § 159.0592; § 159.065.1. 피후견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담보는 필요하지 않다. Nev. Rev. Stat. § 159.065.4.

26) 안 제144조의2(국선대리인) ①질병, 장애, 연령, 언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44조제2항의 명령을 받았으나 자금능력의 부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는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④국선대리인의 선임과 그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7) 토론문에서도 최근 이혼사건에서 면접교섭을 둘러싼 부모의 갈등과 대립이 점점 심화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녀의 탈취가 일어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8) 폐기안 제28조 제3항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력(비송능력)을 부여하였다가 다시 박탈하는 구조(폐기안 제2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0조)는 합리성이 없습니  
다.

## 6.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의 즉시항고권자 관련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의 즉시항고권자를 추가  
하는 안은 자녀의 소송능력,<sup>29)</sup> 실질적인 절차보조가 실현되  
는지의 문제, 항고권자의 확대에 인하여 실무상 어려움이  
없는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안(제122조)은 즉시항고권자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  
니라 불복신청권자의 절차보장을 위하여 누락된 즉시항고  
권자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권의 상실,<sup>30)</sup>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신고로 실권된 친권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 재산관  
리권의 회복 신고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 외에 다른 청구  
권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폐기안 제122  
조). 미성년 자녀는 단독으로 친권상실 청구도 할 수 있지만  
(폐기안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반대 해석), 실권회  
복 신고 결정에 대하여 단독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균  
형이 맞지 않습니다.<sup>31)</sup> 따라서 실권회복의 신고 결정에 대하  
여는 상대방 외에 미성년 자녀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926조).<sup>32)</sup> 친권회복의 신고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회복의 신고가 포함되므로 친권회복  
의 신고 결정청구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  
권만의 회복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sup>33)</sup> 본

29) 폐기안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비송행위를 할 수 있다(폐기안 제50조 제1항 제2항 제2호의 반대 해석).

30) 일본의 경우,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 상실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러한 심판을 받은 자, 즉 친권을 상실, 정지 또는 관리권을 상실하는 자 및 그 친족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일본 가사사건수속법 제17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 친족에는 자녀 자신도 포함된다. 이러한 신청을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 외에 친권상실 등의 신청권자인 자녀 및 그 친족,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일본 가사사건수속법 제172조 제1항 제4호). 예전에는 자녀,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즉시항고권자로 되어 있지 않았지만,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자녀는 친권에 관한 당사자이며, 친권상실 등의 심판으로 직접 영향을 받을 자라는 점, 또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자녀의 부모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자녀,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친권상실 등 심판의 신청인으로 된 것(일본 민법 제834조)을 받아들여 이와 균형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개정된 것이다. 한편 신청권자인 아동상담소장 및 검찰관은 신청인이 경우에 한하여 친권상실 등의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

31) 일본의 경우,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 상실 심판의 취소 심판에 대하여는, 자녀 및 친족,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일본 가사사건수속법 제172조 제1항 제5호). 예전에는 즉시항고권자를 자녀의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친권상실 등의 신청권자(자녀,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와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자(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예를 들면, 자녀가 입소해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자녀의 부모 중 친권상실 등이 없었던 자)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2012년 개정 때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즉시항고권자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즉시항고권자에 포함시켰다. 신청을 각하한 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 및 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 상실의 심판을 받은 자 및 그 친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일본 가사사건수속법 제172조 제1항 제6호). 예전에는 신청인에게 즉시항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2013년 민법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제33조의 7이 개정되어 아동상담소장이 친권상실 등의 심판의 취소신청권자가 되었으며, 신청인이 아동상담소장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즉시항고권자로 추가하였다. 아동상담소장은 신청인인 경우에는 친권상실 등의 심판 취소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신청인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스로 친권상실 등의 심판취소의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아동상담소장에게까지 다른 자가 한 신청을 각하하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32)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4조, 폐기안 제73조 제2항). 이는 청구인에게 친권 또는 관리권을 회복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청구를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103조를 근거로 상대방 또는 자녀의 친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는, 사법연수원 편, 앞의 책, 「법원실무제요 가사(II)」, 1556면.

33) 또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을 제외한 나머지 친권만 회복시킬 수도 있다. 사법연수원 편, 위의 책, 「법원실무제요 가사(II)」, 1155면.

인 이외의 다른 청구권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본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sup>34)</sup>

불복신청권은 심문청구권과 더불어 절차적 기본권의 중핵을 이루는 권리입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실무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 III. 박인환 교수님의 토론 관련

#### 1. 장애인을 위한 절차보조인 규정의 필요성 관련

폐기안 제16조가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장애인의 사법 절차상의 의사결정지원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발표자는 이미 여러 차례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는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을 위한 제도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sup>35)</sup>

#### 2. 관할과 민사법원에서의 이송 관련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회복청구의 출소기간의<sup>36)</sup> 도과가 예상되는 경우 등 상속회복청구 사건에서도 지방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이 필요하여<sup>37)</sup> 유류분(遺留分)의 반환청구 사건과 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사건으로 제한적 열거(폐기안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지사건의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출소기간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는 규정(민법 제999조 제2항 후단)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sup>38)</sup> 더 이상 인지판결 확정 전에 출소기간이 도과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상속회복청구사건과 유류분반환청구사건 등은 이송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하여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절차로 심리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sup>39)</sup>

34) 청구한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익이 없어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즉시항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5) 김원태, 앞의 논문, “성년후견 등 심판절차에 관한 가사소송법 정비 방안에 대한 관견,” 280면; 김원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가사소송법 개정,” 「법학연구」, 제23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7면; 김원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과 실질적 절차보장,” 「민사소송」, 제21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7, 205면 등.

36)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가 자신이 공동상속인이란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므로,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것은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자 2021헌마1588 결정.

37)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인지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은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다(폐기안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2호 마목,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38)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 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피인지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하여 주겠다는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인지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헌법재판소 2024. 6. 27.자 2021헌마1588 결정[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위헌].

39) 2018년 개정안에서는 이송요청 사건을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係屬)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결과가 모순 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와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민사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2018년 개정안 제6조 제1항).

### 3. 가사소송능력 관련

(1) 상고, 재항고 등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그 절차적 권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제한 이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에서 가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논의를 할 당시에는 성년후견제의 도입으로 민법상 행위능력제도가 무능력자 제도에서 제한능력자 제도로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5조의 일부 개정이 있기 전의 시기였습니다. 가사소송능력과 관련하여 제한능력자라도 실체법인 민법에서 청구권자(당사자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적극적 당사자로서의 소송능력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sup>40)</sup> 이를 토대로 ‘원고로서 소의 제기, 그에 따른 제1심 소송행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의 소극적 당사자(피고)로서의 소송행위와 상소심에서의 소송행위(항소인 또는 상고인으로서의 적극적 소송행위 포함)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sup>41)</sup>

제한능력자가 항소(항고)의 제기는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항고)제기에 따라 항소심(항고심)으로 이심되어야 되어야 비로소 항소심(항고심)계속이 발생하며 항소(항고) 제기 전에는 제1심에 계속 중이므로 항소(항고) 제기는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항소 또는 항고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폐기안 제28조 제2항 제2문 후단).

(2)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한능력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폐기안 제28조 제4항 제1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의 대리를 시작한 때부터

제한능력자는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폐기안 제28조 제4항 제2문)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즉 적어도 법정대리인이 소송대리를 결정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그 동의를 철회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책임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성년후견사건의 청구 취하 관련

후견사건 등 일정한 청구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는 규정(폐기안 제61조)과 관련하여 모든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지원은 본인의 희망과 선호를 존중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 후견사건의 일반규정으로 이러한 원칙을 선명(宣命)하는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민법에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민법 제9조 제2항)을 두고 있으며,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민법 제12조 제2항),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라는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4조의 2). 후견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사(본인의 희망과 선호)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지만,<sup>42)</sup>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주관적 이익(본인의 의사)과 객관적 이익(미성년자의 복리)이 충돌할 경우에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할 것입니다.<sup>43)</sup>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실체법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절차를 규정하여야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을 가사소송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

40) 물론 당사자적격과 소송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당사자적격자와 소송능력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41) 그런데 원고로서 소의 제기에 따른 제1심 소송행위에 반소피고로서 응소행위는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게 되며, 피고의 반소제기에 대한 응소행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1심 소송행위에 ‘반소에 대한 응소(應訴)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폐기안 제28조 제2항 제2문 괄호). 예를 들어, 제한능력자가 원고로서 피고의 유책행위를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반소 원고)가 오히려 원고(반소 피고)의 유책행위를 이유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만약 제한능력자가 이에 응소할 수 없다면 패소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42)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민법 제947조).

43)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67조 제2항, 제909조의2 제4항 제6항, 제931조 제2항).

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5.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지원 관련

일반적 절차보조인에 관한 규정(폐기안 제16조) 외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심문이나 진술에 있어 필요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본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근친, 사회복지사, 혹은 그러한 의사소통에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에서는 미성년자의 절차보조인과 같은 피후견인을 위한 절차후견인제도의 도입도 논의하는 하였지만, 폐기안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은 민사소송법상 진술보조인(민사소송법 제143조의 2)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sup>44)</sup>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sup>45)</sup> ①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②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sup>46)</sup>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 2 제1항).<sup>47)</sup>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통역’이 필요한 당사자와 유사하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sup>48)</sup>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가족은 당사자와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므로 진술보조인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당사자의 개인적 특징을 잘 이해하는 장점은 있으나 사건에 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협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 전문상담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언어치료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진술보조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sup>49)</sup>

44) 민사소송법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인제도를 두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 2 제1항).

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074호) 참조.

46) 이와 같은 진술보조인의 인적 범위는 연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가 자신의 특성이나 언어나 소통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견해로서는, 제철웅,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의 진술보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에 대한 비판적 분석,” 「민사소송」, 제21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7, 164면.

47)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①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제1호), ②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제2호)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 2 제3항).

48)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항). 실제로 미국에서는 진술조력인을 ‘인지통역사(cognitive interpreter)’라고 하며, 미국 법원에서는 복잡한 질문을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형식으로 ‘통역’할 수 있는 ‘인지통역사’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Ensuring Equal Acces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Guide Washington Administrative Proceedings”(2011. 5.), 4면. 김원태, “가사소송에서의 의사결정장애 성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61면, 각주 47)번.

49) 김원태, 위의 논문, “가사소송에서의 의사결정장애 성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162면.

## 자녀 양육 방식을 두고 다투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상호 고소로 이어져 상담받으며 태도 고치고 이해의 폭 넓혀가

### 2021버2\*\*\*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3회(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하여 실시),  
집단상담 4회(화상으로 실시)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2회  
등 16회

#### 상담기간

2021. 12. 22. ~ 2022. 6. 22.

####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10년이 경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녀(10세)가 있다. 행위자는 2021년 3월 사건당일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을 공부시키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잠겨 있던 작은 방문을 발과 몸으로 밀어 시가 800,000원 상당의 문틀을 손괴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되었다.

부부는 갈등 원인으로 딸 교육 관련 가치관 및 방법 차이를 꼽았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기 고집대로 심하게 공부를 시킨다는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학습태도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딸이 고집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데다 행위자마저 피해자를 지지하지 않아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행위자는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담에 임하지 않다가 상담자의 독촉을 받고 늦게 상담

에 임하였지만 이후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구청 아동보호기관에 상담신청을 하여 2022년 1월부터 4달간 딸과 함께 상담을 받게 되어, 본소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행위자 상담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입장차이를 이해하면서도 딸과 실랑이할 때 행위자가 자신을 지지해주기 바랐다. 한편, 본건 발생 이후 부부는 각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는 보호처분으로 상담을 받게 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부부 모두 조심하고 있어 폭력이 재발되지는 않았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현재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친구 같은 아버지로 평가하고, 장차 되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도 친구 같은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 역할 점수를 개인의 역할로만 평가하면 10점 만점에 8점이지만, 부부관계 등을 포함할 경우 6~7점으로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행위자는 피해자가 이전보다 딸을 훈육하는 방법이나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자신도 피해자가 딸을 훈육할 때는 개입하지 않고 나중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고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통명스럽고 심한 말투 및 태도가 부드러워져서 부부관계도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사건당시 부부관계만 족도는 0점, 종결상담시는 10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아침에 딸이 금방 일어나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집 밖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를 내는 행동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등 감정조절에 더 유념하기 바랐다. 행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의 안녕임을 강조하면서, 딸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은 최대한 피할 것이며 폭력이 재발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4년 11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라오니모임	11/7	13명	분노 다루기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21	11명	의사소통	
	음주문제 집단상담	11/1	3명	음주와 뇌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8	2명	음주와 트라우마	
		11/15	3명	음주와 공동의존	
		11/22	3명	음주와 회복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본소 상담위원
	집단상담	11/6	10명	가족, 가장 가깝고 제일 먼 사이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11/13	11명	가족관계, 뜻대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11/20	11명	꼭 한 번 살아보고 싶은 가족	
		11/27	12명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동지교실	9/11	49명	반복된 부정적 경험이 만들어 낸 불안(+수용전념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음주문제 집단상담	11/1	16명	음주와 뇌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8	15명	음주와 트라우마	
		11/15	16명	음주와 공동의존	
		11/22	17명	음주와 회복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11/28	28명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 - 의심, 피해망상, 조현병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어떻게 할까요?



## 부모와 자녀 ② - 양자, 친양자 ④

###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

Q 문 35 | 성년후견인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3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동법 제883조 제2호).

### ● 유언으로 입양할 수 없다

Q 문 36 | 형님이 병 중인데 자녀가 없어 유언으로 양자될 자를 지정해 두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 유언으로는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 ● 배우자 있는 사람도 입양될 수 있다(1)

Q 문 37 | 고아로 자라서 결혼하였습니다. 평소 친어머니처럼

모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결혼한 여자도 입양될 수 있나요?

A 결혼한 사람이 입양될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4조 제2항). 그러므로 귀하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 입양될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입양된 때에는 배우자는 양부모 주소지 가정법원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84조 제1항). 다만 이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94조).

### ● 배우자 있는 사람도 입양될 수 있다(2)

Q 문 38 | 손자가 친부모와 교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인 우리를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손자의 부모로 대하고 있고, 친생부모들도 입양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미성년 손자에 대한 입양의 허가가 가능할까요?

A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 사이에 이미 조손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 대하여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참고).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2024) 중에서



**Q** 고등학생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저로 정하고,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아이 아빠가 지급하기로 하고 2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한 번도 아이 아빠는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라 교육비가 많이 들어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아이 아빠는 저와 아이의 전화도 피하여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귀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양육비이행명령결정이 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정기적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감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채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그리고 2024년 9월 27일부터는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①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② 이행명령 결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법원에 과태료 신청 또는 감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운전면허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5). 그 밖에도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또는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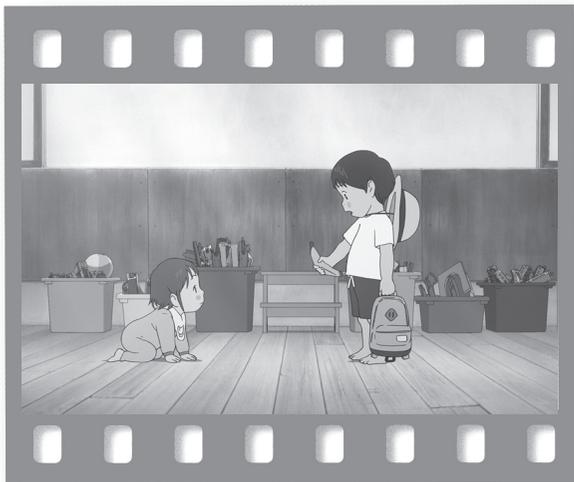
조은경 상담위원



## 〈미래의 미라이〉

감독 호소다 마모루

목소리 출연 가미시라이시 모카, 구로키 하루, 호시노 겐, 아소 구미코, 야쿠쇼 코지



네 살짜리 꼬마 쿤(가미시라이시 모카)의 짧디짧은 인생은 행복하기만 했다. 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과 귀여운 강아지 윗코, 기차 장난감이 잔뜩 쌓여 있는 집은 쿤의 세계의 전부였다. 그러다가 첫눈이 오던 날, 여동생 미라이(구로키 하루)가 태어난다. 귀엽고 연약한 아기를 향한 애정도 잠시, 미라이에게만 쏠리는 부모님의 관심 때문에 쿤은 인생 최초의 서러움을 느끼게 된다. 울면서 정원으로 뛰쳐나온 쿤 앞에 낯선 중학생이 등장한다. 그 애는 자신을 ‘미래의 미라이’라고 소개하며 쿤을 오빠라고 부른다.

‘미래에서 찾아온 동생’이라는 한 줄짜리 로고라인만 듣는다면, 1980년대의 히트작 〈백 투 더 퓨처〉처럼 시간을 거스르며 어떤 대단한 변화를 끌어오기 위해 분투하는 청

춘의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호소다 마모루의 2019년 작 〈미래의 미라이〉에서는 엄청난 모험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분투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인공 쿤이 겪는 갈등의 핵심은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 ‘지금까지 내 세계의 전부였던 이들이 이젠 내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걸까?’,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와 같은 정체성에 관련한 질문들이다. 물론 네 살짜리가 저런 심오한 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 쿤은 지금껏 당연하다고, 언제나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부모의 애정을 빼앗겼다는 본능적인 위기감 앞에 허우적거릴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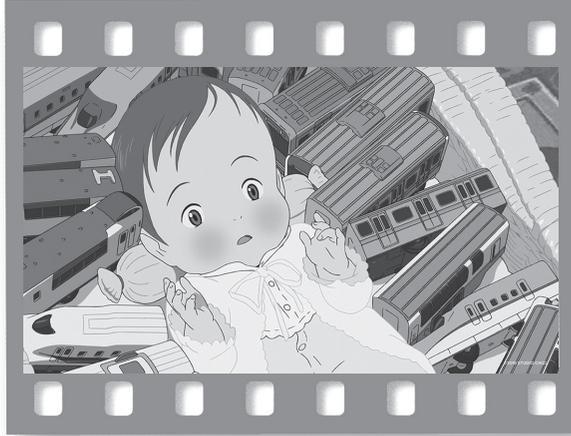
그런 쿤 앞에 각각 다른 시간대에 속하는 동생 미라이, 증조할아버지, 엄마, (심지어) 강아지 윗코 등이 차례로 등장한다. 쿤은 지금의 자신이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의 가족들에게 이끌려 과거와 미래를 정신없이 오가며 삶의 진실을 하나씩 배운다. 사랑을 독점한다고 믿었다가 그 사랑이 얼마든지 재분배되고 확장될 수 있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쓰라린 배신감은 쿤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 어른들은 자주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망각하고 처음부터 어른스러웠던 듯 시치미를 떤다는 것, 핏줄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주 먼 옛날 누군가의 선택 하나가 어떤 운명을 결정지었고 그로 인해 내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고 그 시작은 언제나 겁나고 불안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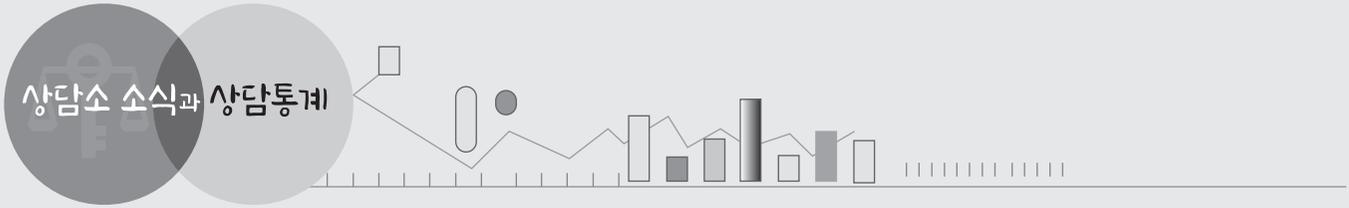
만 그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꼬맹이의 고민은 한때의 유치한 불안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대한 명제로 이어진다는 것.

〈미래의 미라이〉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비단 어른이 아니다. 아빠와 엄마의 짧은 대화 장면에서마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분투해 왔던 시간이 선명하게 느껴진다. 신혼 시절까지 예민하고 신경질적이며 날이 서 있던 엄마는 아이들이 투정하고 울고불고할 때마다 예전의 성정을 버리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확연하게 차분한 인내심을 키우며 애정과 훈육을 번갈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쿤이 태어났을 무렵 육아는 나 몰라라 하며 회사로만 도망쳤던 아빠는 둘째 미라이의 출산과 함께 달라지기로 마음먹었다. 엄마의 복직과 맞물려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새출발하게 된 아빠가 집안일을 전담 하면서, 갓난아기를 편안하게 안고 젖병을 제대로 물리는 법부터 세탁기에 같이 넣고 돌려야 할 종류의 옷을 분류하는 법에 이르기까지 허둥거리면서 전투를 치르듯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에 적응하는 것은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버겁지만, 자신들 역시 성장해야만 아이들의 미래를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부모의 따뜻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최고의 부모가 아닐지 몰라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는 데서부터 아이들의 세계가 출발한다는 점을, 쿤과 미라이의 부모는 알고 있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 2024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 열려

신임 이사장 호선 및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의결

상담소의 2024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가 지난 11월 28일 열렸다. 이번 이사회는 차명희 이사장이 일신상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위임을 받은 곽배희 이사의 주재로 김의재, 조대연, 김명순, 김영옥, 박영립 이사 및 최문원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개회, 전회 회의록 낭독, 안건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지난 9월 임기를 시작한 이번 이사회의 이사장 선임에 대해 차명희 이사장의 위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전회 회의록 낭독, 안건 토의로 이어졌으며 안건토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인사규정', '보수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관련사진 2면)

## 상담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

본소는 지난 11월 14일, 법원행정처의 지목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본 캠페인은 아동학대예방 및 긍정양육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관련 사진 등이 본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본소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본소에서는 릴레이 캠페

인 다음 주자로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애란원을 지목했다.

(관련사진 2면)

## 가정폭력전문가 간담회 개최

본소에서는 지난 11월 6일 가정폭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본소에서 진행 중인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곽배희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면과 비대면 방식의 상담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가정폭력의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고 가정 회복의 가능성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상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의 진행으로 각 프로그램과 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소개하고 한 해 동안의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높아진 반면 정부 지원의 대폭 축소로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의 행위자 상담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본 상담소만이 유일하게 위축되지 않고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상담소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새삼 느끼고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점차 변화해 가는 가정폭력의 양상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향후 상담과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 및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김혜선 교수(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서원 소장(한국감정케어센터), 장희숙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윤경 교수(연세솔루션상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이며, 본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차연실 상담위원, 천다라 상담위원이 함께 참석하였다. (관련사진 2면)

상담 사례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유문숙 자원봉사자와 광배희 소장,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숙현 편집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 자원봉사자 교육 및 모임

2024년도 자원봉사자 모임 및 교육이 지난 11월 20일 상담소에서 진행되었다. 이 모임은 1년 동안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본소에서 마련한 자리로 식사 후 전화

## 2024년 11월 상담통계

<b>총 건수 4,294</b>				
<b>법률상담 (3,306)</b>				
면접	전화	인터넷	서신	지상
855	2,341	104	5	1
<b>화해조정</b>		<b>소장 등 서류작성</b>		<b>소송구조</b>
925		30		33

• 인터넷 정보 이용 217,064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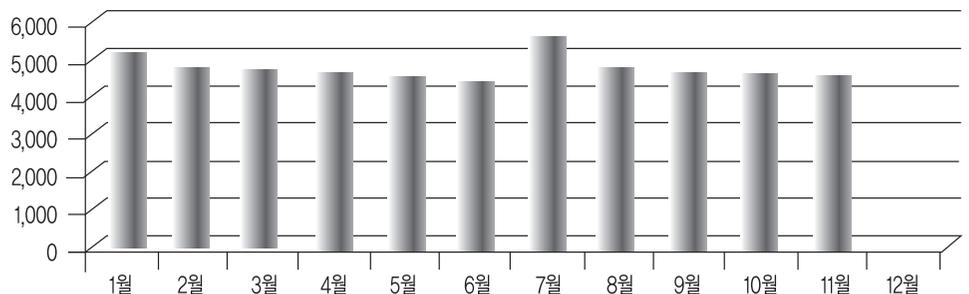
2024년 11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294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3,306건(77.0%), 화해조정 925건(21.5%), 소장 등 서류작성 30건(0.7%), 소송구조 33건(0.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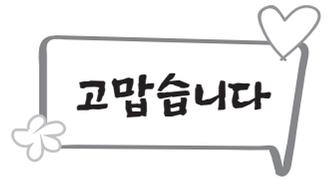
법률상담 3,306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4년 10월에 비해 위자료·재산분할(6.4%→6.8%), 친권·양육권(4.7%→5.1%), 면접교섭권(1.5%→1.6%), 인지(1.4%→1.6%), 개명(1.0%→1.1%), 성변경(1.1%→

1.2%), 파양(0.1%→0.2%), 미성년후견(1.2%→1.3%), 성년후견(3.2%→3.3%), 가사기타(11.7%→21.4%), 부동산(0.0→0.2%), 채권·채무(0.4%→0.5%), 민사절차(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3,306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55건(25.9%), 전화상담 2,341건(70.8%), 인터넷상담 104건(3.2%), 서신상담 5건(0.2%),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24년  
월별  
총건수





고맙습니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1월 7일 여성정책연구원 이 주관하는 '조손가족을 위한 정책 모색' 화상 간담회에 참여하였다. 12일에는 법무부 감사회의에 참석하였고, 13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사건을 조정하였다. 21일에는 김병후 이사 출판콘서트에, 25일에는 법무부 주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26일에는 대검찰청을 방문하여 공판 2과 국진 과장, 이성화 검찰연구관, 김성수 수사관 등과 함께 본소와 대검찰청과의 공익소송 협약에 따른 사건 진행 상황과 추후 협조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본소 북미영 상담위원과 김민선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갈 클리닉(II) 수강생들의 상담참관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지도하였다. 21일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사건을 조정하고, 본소 김병후 이사의 신간 『보통의 분노』 출판콘서트에 참석하였다.

### 곽배희 소장, 김병후 이사 출판콘서트 참석

곽배희 소장은 지난 11월 21일 더 라움에서 열린 상담소 김병후 이사의 신간 『보통의 분노』 출판콘서트에 참석했다.



## 2024년 11월 자원봉사자

### • 야간상담을 해주신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님

### • 대학생 자원봉사

정정연, 정가영, 정윤지, 류제빈, 김민서, 이양현, 나운우, 김연지, 서채영, 고유진, 김태연, 최연지, 김민지, 정재경, 박수빈, 노태연, 김소영, 정태윤, 김현빈, 오나현, 강민서, 김용평, 조민규, 손예린, 김지원, 김주하, 한아름, 이재영, 장진혁, 최민제, 강영진, 김시현, 하유지, 이서연, 황예원, 김상은, 이혜원, 이채운, 이다경, 임성완, 김예지, 김경민, 이경주, 윤서영, 구가연, 손유정, 김예원, 천장원, 원대한, 김온유, 김지우, 정민주, 김유빈, 장다원, 이은세, 최서연, 이다빈, 방승현, 전서영, 문정현, 김다현 님

## 후원 고맙습니다



###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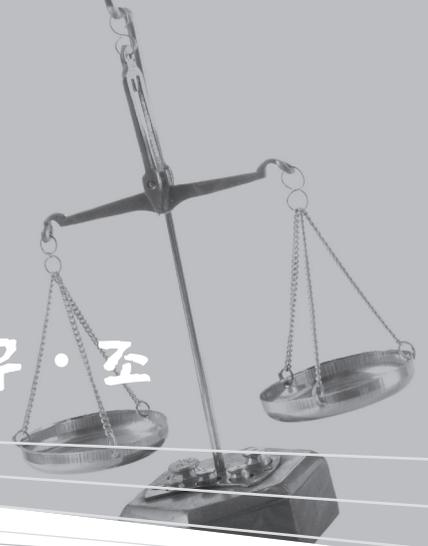
이승훈, 이현혜, 천정환, 최문원 님

###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무책임한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 판결

법률구조 2024-1-22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손해배상(사실혼 파기)

**내용 :**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40대)는 202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여, 1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교제 중 자신의 경제력과 당시 혼인상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자신이 유부남이며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감쪽같이 숨겼다. 피고는 사실혼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가사에 무관심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하거나 과격하게 행동하였다. 원고는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였지만, 매번 실패하였고 피고는 되레 화를 내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물건을 던지는 등 원고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는 주거지에서 원고를 상대로 자살 협박을 하였고, 원고의 과거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을 원고 몰래 취득하여 이를 가지고 협박하여 원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0. 23.)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11.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24. 10.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1항,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혼외자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법률구조 2024-1-78

담당 : 성기배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여, 5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남, 40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여, 30대)와 □□(남, 30대) 사이의 자녀이다. 원고(여, 30대)는 대학교 재학 중 피고를 만나 2009년 혼인하였다. 같은 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원고와 피고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2011년경부터 별거하였다. 원고는 자녀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방문하여 자녀를 돌보는 등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으나, 피고의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상의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법적절차를 미룬 채 별거생활을 계속하였다. 2018년경 원고는 □□□을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 혼인을 약속하였다. ○○○을 임신하게 되어 출산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와 법적으로 혼인 중에 있어 ○○○을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즉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여러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다시 미뤘은 끝에 2023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을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0. 23.)

1. 피고와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5년 전 고국으로 떠나 연락 두절된  
중국인 아내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4-1-121**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0대)와 피고(여, 40대)는 200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중국 국적자인 피고를 만나 한국에서 2년간 혼인생활을 하였다. 어느 날 피고는 한 달 간 친정인 중국에 다녀오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공항에 나가 배웅을 해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중국에 간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원고는 피고가 중국에 거주하는지 한국에 거주하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한 채 15년 동안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추후 임대주택 신청을 위하여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4. 10.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4-1-320**

**담당 :** 박시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40대)은 1997년경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을 돕기 위해 카드대출을 받게 되었다. 대학교 등록금 또한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형편이라 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해결하였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문구도매업을 도우면서 조금씩 변제해 나갔다. 그러던 중 2003년경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전두엽 절제수술을 받았고, 약 3년간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수억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비롯한 채무는 가족들 모두의 빚으로 남았고, 그 와중에 문구도매업마저 장기간 적자에 시달리다가 결국 폐업하였다. 이후 식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고, 신청인은 대학교 자퇴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다. 2006년경 컴퓨터 과외 등을 시작하였고, 대학교에 재입학하면서 학자금을 비롯한 생활비가 부족해 제1금융권과 사금융, 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경 과외를 그만두면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고, 채무상환을 고민하던 중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47회차 납부 후 사정이 생겨 중도포기를 하였고, 신청인은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신청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사건·사고에 휘말리게 되었고, 3년간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다. 최근 출소하여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현재는 보호시설을 통해 전일제 근로를 하여 월 평균 1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채무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하고 장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4. 10. 17.)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024년 12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회상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12월 휴강)
- ▶ 강사 : 김명수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5년 연 2회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5년 1월 14일(화) ~ 16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의 제목	강사
12월 11일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표현, 자살 (+자기발견적 치료)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5년 8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삼성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 우리 가족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일시 ▶  
2025년 8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